

긴급 입찰공고 사유서

□ 추진 근거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
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-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- 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□ 추진 사유

- 'KIMS TECHFAIR 2024 대행 용역'과 관련하여 행사 일자가 2024년 8월 21일~22일 2일간 개최 예정임. 업무 추진상 행사 홍보가 개최 일자 최소 2~3개월 전에 시작되어야 하며, 전시장 설계 등 사전 준비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. 이에 행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, 조기에 용역업체 선정이 필요하여 긴급 입찰공고가 필요함.
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5항제1호에 의거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 요청